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27138 판결 [물품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변경전: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굳센

담당변호사 김진필, 이현승

피고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석

변론 종결2020. 7. 16.

판결 선고2020. 9. 10.

주 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03,733,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733,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공동'사업자이면서 피고 C 명의로 원고와 방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방판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피고 D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와 방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자신의 올케인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방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방판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것이고, 원고 직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C은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경 원고에게 방판 대리점 개설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등의 사유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듣게 되었다.

나. 그러자 피고 D는 2015. 3. 1.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올케인 피고 C 명의로 원고와 방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방판 대리점(지사) 거래 약정서'에 피고 C 명의의 서명을 한 사람도 바로 피고 D였다.

다. 이후 피고 D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송파 신천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경 위 송파 신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때까지 위 송파 신천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은 총 387,237,380원이었고, 회수한 물품대금은 283,503,640원이었다.

마. 원고는 나머지 물품대금 103,733,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 25.경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피고 C 명의의 채무분할변제 계획서 및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이때 피고 C 명의의 서명을 한 사람도 역시 피고 D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원고는 먼저 피고 D로부터 방판 대리점 개설 신청을 받았던 바 있으므로 피고 C이 아닌 피고 D가 피고 C 명의로 서명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계약서 등 중요한 모든 서류에 피고 C이 아닌 피고 D로부터 서명을 받았던 점, 피고 C은 실제 방판 대리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C 명의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E'인데, 이 역시 피고 D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방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D라고 인정되고, 이는 원고와 송파 신천 대리점 사이의 금전거래에 계약명의자인 피고 C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피고 C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위 방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3,733,740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7.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민